

직불카드 가맹점 약관

제1조(가맹점)

- 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직불카드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간의 직불카드와 관련된 업무취급은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란 본 약관을 승인하고 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은행 이 승인하는 업소, 시설을 말합니다.

제2조(직불카드 취급 범위)

가맹점은 다음 각호의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습니다.

1. 국내은행이 발행한 직불카드
2. 은행과 제휴한 해외 직불카드

제3조(준수사항)

- ① 가맹점은 직불카드처리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단말기의 구입, 설치 및 유지 등의 비용은 가맹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단말기의 설치 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은행은 가맹점이 동 단말기로 직불카드를 취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 ③ 가맹점은 은행이 정하는 가맹점 표식(국제카드 가맹점인 경우에는 국제카드가맹점 표식포함)을 점포내외 에 직불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 식별할 수 있도록 부착 하여야 합니다.
- ④ 가맹점은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직불카드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안됩니다.
- ⑤ 가맹점은 단말기를 불법, 부정한 목적 등에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⑥ 가맹점은 직불카드 단말기의 보안장치에 관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됩니다.

제4조(양도금지 등)

가맹점은 가맹점 계약에 따른 법률상의 지위 기타 권리를 양도, 전매 또는 기타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5조(결제계좌의 개설)

- ① 가맹점은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상품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이체 받을 예금계좌(이하 '결제계좌'라 한다)를 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방법으로 개설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은 제1항의 결제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으로 은행에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6조(판매대금 청구 및 입금)

- ① 가맹점은 제2조의 직불카드 취급에 의하여 판매한 대금을 은행에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상호 협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은행은 가맹점이 청구한 판매대금에서 제1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공제한 후 제5조의 결제계좌에 입금합니다.
- ③ 은행은 제2항에 의한 판매대금을 청구 익영업일(은행영업일 기준)이내에 입금하여야 하며, 공휴일 및 은행비영업일 거래는 은행의 다음 영업일 거래로 간주합니다.
- ④ 은행은 가맹점이 해외 직불카드회원에게 판매한 대금도 제①항 내지 제③항의 처리 절차에 준하여 원화로 입금하며 은행과 제휴하고 있는 외국카드사가 정한 해당 거래 처리일의 소정 환율을 적용합니다.

제7조(운영시간)

가맹점의 직불카드 취급 가능 시간(한국시간 기준)

1. 국내 08:00 ~ 23:00
 2. 국외 00:30 ~ 24:00·
- (단, 월요일 06:30~24:00, 월요일이 공휴일인경우 익영업일)

제8조(거래의 취소)

-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거래발생 당일에 한하여 직불카드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가맹점의 착오로 판매대금을 잘못 청구한 경우
 2. 직불카드를 소지한 회원이 거래취소를 요청한 경우

- ② 제1항의 단말기에 의한 거래 취소는 거래가 발생한 당일의 제7조에서 정하는 운영시간중에 가능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이후에 거래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은행은 가맹점수수료의 환불 등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9조(회원과의 분쟁)

- ① 직불카드에 의해 판매하거나 제공한 상품 및 서비스에 관한 분쟁은 가맹점과 회원 간에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회원과 직불카드에 의한 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은행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0조(판매대금의 입금유예 및 환입)

- ① 은행은 제9조의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해당 가맹점에 당해 직불카드 판매대금의 입금을 유예하거나 이미 지급한 직불카드 판매대금을 환입 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은 통신장애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불카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불카드판매대금 입금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거래내용의 확인)

가맹점이 처리한 거래내용에 대해서는 은행이 별도의 거래명세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과 가맹점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2조(가맹점수수료)

- ① 은행은 직불카드 판매대금의 2%이하의 수수료를 징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취소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② 가맹점은 회원에게 전항의 수수료 기타 카드거래와 관련한 서비스 수수료를 전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상호협력)

전산, 통신장애 또는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직불카드 거래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경우에는 은행과 가맹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 ① 가맹점은 은행에 신고한 가맹점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가맹점이 제1항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은행으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락하거나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5조(효력의 발생 및 유효기간)

-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은행은 가맹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의 통지에는 “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 ④ 제1항 내지 3항은 제16조에 의한 가맹점 자격정지, 상실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제16조(계약의 해지 등)

- ① 은행은 가맹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별 통지하여 가맹점 자격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본 약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3. 단말기의 대여, 양도, 담보제공 등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 4. 신용카드 회원에게 직불카드 제시를 요구하는 등 회원의 의사에 반하는 판매 행위를 한 경우
 - 5. 가맹점의 불량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되는 등 서비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가맹점이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은행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우편 등 방법으로 30일전까지 가맹점에게 통보 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점은 가맹점 표식 및 광고물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은행은 단말기를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제17조(비밀의 보장)

가맹점은 직불카드를 취급함에 따라 취득한 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 하거나 외부에 유출할 수 없습니다.

제18조(약관 위반시의 책임)

은행과 가맹점은 본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예금거래 기본약관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제20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